

제29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24. 9. 27.)에서 의결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4년 10월 2 일

양구군의회 의장 정 창 수



양구군의회 규칙 제 30 호

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.

⑥회의 내용의 신속한 공개를 위하여 임시회의록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

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8조의2(회의의 중계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지방의회 누리집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한다.

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공청회·청문회·행정사무감사

및 조사를 포함한다.)를 대상으로 한다.

제3장제6절에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3(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사 중계영상 기록·보존하여 의회 누리집 등에 상시공개한다. 다만,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

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공청회·청문회·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.)를 대상으로 한다

제66조의2제3항 중 “72시간 전까지(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하되,”를 “48시간 전까지(”로 한다.

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하며,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적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